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6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민형배·박홍근·이정문

김원이 • 이기헌 • 남인순

전용기 · 김현정 · 이수진

김문수・조계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 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 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 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⑩ (생 략)	①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		
	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됨		
	으로써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		
	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⑪</u> ~ <u>⑭</u> (생 략)	<u>⑩</u> ~ <u>⑮</u> (현행 제11항부터 제		
	14항까지와 같음)		